

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

1. 개정시행일 : 2015. 4. 6.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1 조 ~ 제 10 조 (생략) (생략)	제 1조 ~ 제10조 (좌동) (좌동)	
제 11조(서비스의 제한) ①~⑥ (생략)	제 11조(서비스의 제한) ①~⑥ (생략)	
⑦ 기타 법령사항의 사유로 인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될 때	⑦ 최종거래일로부터 1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자동화기기 1일 인출 한도는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. 이 경우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출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. (내용추가) ⑧ 기타 법령사항의 사유로 인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될 때	인출한도 축소기준 추가  ⑦->⑧로 이기
제 12조 ~ 제 16조 (생략)	제 12조 ~ 제 16조 (좌동)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